[정 정 대 비 표]

■ 정정 집합투자기구 및 정정 서류

펀 드 명	BNK든든한TDF2030증권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
정 정 서 류	(간이)투자설명서
정 정 사 유	- 최근 결산기 재무제표 확정 - 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
효 력 발 생 일	2025년 11월 25일

■ 정정대비표

[간이투자설명서]

항목	정정사유	정정 전	정정 후
[요약정보]			
투자비용	최근 결산기 재무제표 확정	-	- 최근 결산일 또는 2025.11.10 기준으로 업데이트
투자실적 추이 (연평균수익률)	최근 결산기 재무제표 확정	-	- 최근 결산일 또는 2025.11.10 기준으로 업데이트
운용전문인력	-	-	- 2025.11.10 기준으로 업데이트

[투자설명서]

항목	정정사유	정정 전	정정 후
[요약정보]			
투자비용	최근 결산기 재무제표 확정	-	- 최근 결산일 또는 2025.11.10 기준으로 업데이트
투자실적 추이 (연평균수익률)	최근 결산기 재무제표 확정	-	- 최근 결산일 또는 2025.11.10 기준으로 업데이트
운용전문인력	-	-	- 2025.11.10 기준으로 업데이트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	-	- 2025.11.25: 최근 결산기 재무제표 확정, 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	-	- 2025.11.10 기준으로 업데이트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최근 결산기 재무제표 확정	가. ~ 나. (생략) 다. 재간접형 구조 이 투자신탁은 아일랜드에서 설정된 Dimensional Fund Advisors가 운용하고 있는 역외펀드(UCIT Fund)에 주로 투자하는 재간접형 집합투자기구입니다. <그림 1>	가. ~ 나. (현행과 동일) 다. 재간접형 구조 이 투자신탁은 아일랜드에서 설정된 Dimensional Fund Advisors가 운용하고 있는 역외펀드(UCIT Fund)에 주로 투자하는 재간접형 집합투자기구입니다. <그림 2>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최근 결산기 재무제표 확정	가.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1) 주요 투자전략 투자전략 (생략) 피투자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 투자대상국가의 현황 - (2) ~ (3) (생략)	가.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1) 주요 투자전략 투자전략 (현행과 동일) 피투자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 펀드규모 및 투자비중 업데이트 투자대상국가의 현황 - 투자대상국가 업데이트 (2) ~ (3) (현행과 동일)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최근 결산기 재무제표 확정	-	- 최근 결산일 기준으로 업데이트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최근 결산기 재무제표 확정	가. (생략)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	가. (현행과 동일)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 최근 결산일 기준으로 업데이트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	가. (생략) 나. 과세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투자신탁 단계에서의 과세와 투자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 · 배당소득은 귀속되는 시점에서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의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하는 날 포함)에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원천징수세액은 다음과 같은 범위를 한도로 환급을 받고 있습니다 - 발생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	가. (현행과 동일) 나. 과세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투자신탁 단계에서의 과세와 투자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 · 배당소득은 귀속되는 시점에서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의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하는 날 포함)에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2025년 1월 1일 이후부터 투자신탁에서 외국납부세액 발생 시 투자신탁 단계에서의 별도의 환급절차가 없습니다. - 발생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

		칙 - 수익자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 (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되는 날 포함)에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되며,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채권 및 외국집합투자증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 손익을 분배하는 경우 당해 매매·평가 손익은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신설> (3) ~ (5) (생략)	칙 - 수익자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 (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되는 날 포함)에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되며,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채권 및 외국집합투자증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 손익을 분배하는 경우 당해 매매·평가 손익은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2025년 1월 1일 이후부터 원천징수의무자(판매회사)가 수익자에게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하는 시점에 수익자가 납부할 세액에서 수익자별 외국납부세액 공제 금액을 차감하여 원천징수 합니다. (3) ~ (5) (현행과 동일)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최근 결산기 재무제표 확정	-	- 최근 결산일 또는 2025.11.10 기준으로 업데이트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	최근 결산기 재무제표 확정	-	- 최근 결산일 또는 2025.11.10 기준으로 업데이트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세전 기준)	최근 결산기 재무제표 확정	-	- 최근 결산일 또는 2025.11.10 기준으로 업데이트
제4부. 집합투자기구의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	-	- 최근 결산일 또는 2025.11.10 기준으로 업데이트

<그림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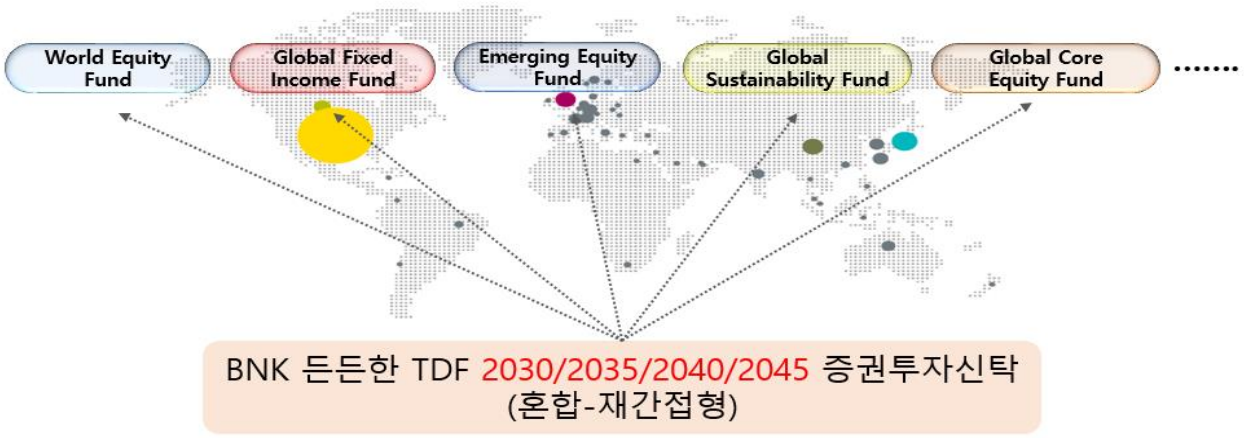

BNK 든든한 TDF 2030/2035/2040/2045 증권투자신탁
(혼합-재간접형)

<그림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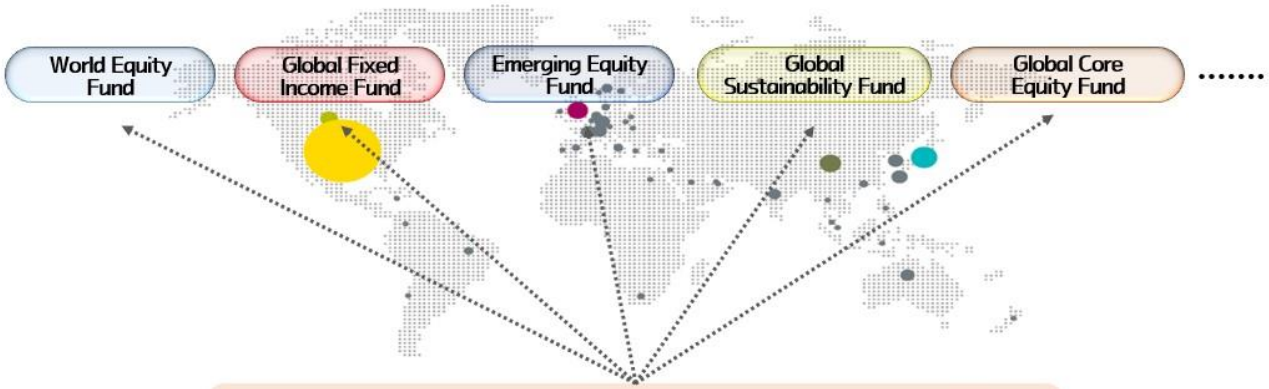

BNK 든든한 TDF 2030/2035/2040/2045/2050
증권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

<끝>.